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2. 5.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 1. 2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20. 1. 22.
- 다. 상정일자 : 제235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0. 2. 5.)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한 법제처 협업과제 결과에 따른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임명 및 위촉권에 대한 사항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1) 구청장의 임명 및 위촉권의 제한사항 삭제
(안 제4조제3항, 안 제17조제3항)
- 2) 위원회 개의 정족수 관련 규정 개정(안 제6조제2항)
- 3)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비상설 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제4항)

3.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준호)

가. 조례 개정 배경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차원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함.

나. 주요 조문 검토

- 구청장의 위원 임명 및 위촉권 제한 사항 삭제(안 제4조제3항)
- 위원회 개의 정족수를 당연직을 제외한 도시계획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과반수 출석으로 제한 사항 신설(안 제6조제2항)
- 위원장이 간사 및 서기를 임명할 수 있도록 임명권한 제한 사항 개정(안 제10조제2항)
- 구청장의 공동위원회 위원장 임명 및 위촉권 제한 사항 삭제(안 제17조제3항)
-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상설 운영에서 필요시 운영하는 비상설 규정으로 개정(안 제17조제4항)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임기 규정 삭제(안 제18조)

다.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의 조문별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위원 구성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특성 성별 위촉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고 위원회 개의 정족수는 당연직 출석 개의요건을 전문가 중심으로 변경함.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3항 및 제112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임명과 위촉의 직접 규정

은 구청장의 위원임명 및 위촉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으로 삭제하였으며,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임명에 관한 사항도 상위법 시행령 제 112조제4항 및 제111조제7항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명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수정하였음.

- 아울러 도시건축위원회는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중 자치구 권한 위임 사무 처리를 위해 2015. 12. 31. 구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운영횟수가 한 차례에 지나지 않아 위원회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설에서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함.
- 상기 내용을 살펴본 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문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으로 위법성은 없어 보임.

다만, 새로이 개정된 조례의 적용관계를 밝히거나 종전의 조례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적용례 및 경과조치의 필요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

 처음으로